

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4년 6월 2(월) 17:00

2. 회의장소 : 효성관 8층 종합회의실

3. 참석위원 : 9명 참석

4. 불참위원 : 1명 (김진한 위원)

5. 회의안건

1) 제1안건 : 위원장 선출

1) 제2안건 : '잉여금 처리 원칙' 심의

6. 회의내용

1) 제1안건 : 위원장 선출

임시 사회자 :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인 관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리부서인 기획예산팀 팀장이 위원장 선출 사회를 진행함에 대해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,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진행함.

최경수 위원 : 기획처장이신 오태균 위원을 추천함.

이용하 위원 : 오태균 위원 추천에 동의하고 재청함.

임시 사회자 :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오태균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구함.

전 위 원 : 전원 찬성함.

임시 사회자 : 전 위원 찬성으로 오태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지 하고, 위원장에게 사회를 이관함.

2) 제2안건 : '잉여금 처리 원칙' 심의

위 원 장 : 2013 결산 등록금 회계 차기이월금과 2014 본예산 전기이월금에 대해 설명하고, 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 설명함.

이용하 위원 : 이천 연수원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 질의함.

사 무 처 장 : 현재 이천시와의 협의는 마무리되었고, 이천시가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.

최경수 위원 :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14 본예산을 심의 완료했으므로 결산 후 최종 잉여금에 대한 처리원칙만 논하면 될 것으로 봄.

위 원 장 : 잉여금에 대한 처리원칙에 대해 토론해 주기 바람.

최경수 위원 : 잉여금 추가집행이 교육용 시설 및 공사에 집중 계획되어 있는데, 다른 목적 사업을 위해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.

기획예산팀장 : 현재 장학금 등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많은 부분을 반영했으며, 현재 발생한 잉여금은 교지 매입 등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이를 해당부분에 추가 집행하려 하는 것임을 설명함.

최경수 위원 : 과거부터 계속 진행하려던 사업이므로 처리원칙에 이의가 없음.

이용하 위원 : 작년 평의원회부터 계속 검토하여 진행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음.

임인택 위원 : 처리원칙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찬성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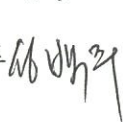
위 원 장 : 위원들의 추가 의견 제시를 요청함.

전 위 원 :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찬성함.

위 원 장 : 전 위원 찬성으로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한 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함. (폐회시간 18:00)

2014년 6월 2일


위원장 : 오태균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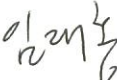
위 원 : 성백주 

최경수 

함용석 

임인택 

이은광 

임대홍 

이용하 
김다운 

2014 잉여금 처리원칙

1. 이월금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3 결산 등록금회계 차기이월금 (A)	2014 본예산 전기이월금			잉여금 (A-B)
	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계 (B)	
금액	51,522	21,024	26,816	47,840	3,682

※ A :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제외

2. 2014 본예산 심의 결과

▶ 대학평의원회 심의 완료 (2014년 1월 15일)

: 2014회계연도 교지 확보 및 교사, 연수원 신축 등을 위한 예산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·편성하여 교사확보율 향상과 교직원, 학생, 동문을 위한 연수 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바람

▶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(2014년 1월 20일)

: 우리 대학의 경우 과거부터 계속 교지 및 교사 확보계획을 진행해왔으므로 2014회계연도 교사 확보와 연수원 신축 등을 위한 예산을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여 교사확보율 향상과 교직원, 학생, 동문을 위한 연수 시설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바람

2013 잉여금 처리원칙 / 2014년 본예산 심의 결과 / 1월 15일 / 1월 20일

▶ 2013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2013 회계 교지 매입 등을 위한 예산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교지 확보 및 교육 기반시설 사업에 사용

▶ 2014 이후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처리원칙을 재논의 함